

5.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2000-40호 2000. 2. 11

개 정 이 유

주택건설촉진법이 2000년 1월 28일 개정·공포되어 국민주택기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결산보고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하게 하는 등 시행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자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매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함.
- 나.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중에서 대표자를 지정하여 국민주택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주택회보